

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김경훈 의원)

2024. 4.

푸른도시여가국

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

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1695호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

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

보고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상위법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)개정에 따른 우리시

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,

우리시 ‘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계획’ 수립 시, 우리시의 우수한

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

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,

우리국 검토의견은 ‘원안동의’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